

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.
관련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중 개정령

•동력자원부령 제96호 (1988. 4. 7)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8]의 제1호 육용강제보일러(분류번호 1-1001) 제조업표 하단의 비고란중 제2호, 동 별표의 제2호 주철제보일러(분류번호 1-1002) 제조업표 하단의 비고란중 제2호, 동 별표의 제3호 온수보일러(분류번호 1-1003) 제조업표 하단의 비고란중 제2호, 동 별표의 제4호 구멍탄용 온수보일러(분류번호 1-1004) 제조업표 하단의 비고란 및 동 별표의 제10호 구멍탄용 연소기기 제조업표 하단의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작업장은 당해 제조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동거나 공중이 되어 있어야 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작업장에 관한 경과조치) 동력자원부령 제76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시행당시의 육용강제 보일러 제조업자·주철제보일러 제조업자·온수보일러 제조업자·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제조업자 및 구멍탄용 연소통제조업자로서 이 규칙

시행당시 별표 8의 설치기준에 따른 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별표 8의 설치기준에 따른 작업장을 갖추기 전이라 하더라도

당해 작업장이 제조업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작업장을 자신의 소유로 하거나 1년 이상의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동거나 공중을 하여야 한다.

• 개정이유

종전에는 육용강제보일러등 보일러제조업 및 구멍탄용연소기기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작업장을 갖추어야 하고, 이미 동보일러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4월 7일까지 동 기준에 맞는 작업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던 바, 수도권정비지역내에서는 공장용지의 부족과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존제조업자의 대다수가 동 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할 기한을 더 연장하고 아울러 작업장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.

• 주요골자

가. 동력자원부령 제76호로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육용강제 보일러제조업자·주철제 보일러 제조업자·온수보일러 제조업자·구멍연탄용온수보일러 제조업자 및 구멍탄용연소통 제조업자에게 별표 8의 개정기준에 의한 작업장을 동 규칙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갖추도록 함(동력자원 부령 제76호 부칙 제3조).

나. 육용강제보일러등 제조업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작업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동 작업장이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의하여 확보되는 경우 전세기간 또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동 작업장에 관하여 동기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 그 전세기간이나 임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향조정하고 동 작업장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동기 대신 공중을 하여도 될 수 있도록 함(별표 8의 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 및 제10호의 하단의 각 비고란).

<동력자원부 제공>